

가스사고사례 소개



출처/가스안전·발행/한국가스안전공사

사례 1. 가스보일러 제품 노후 사고

▶ 사고일시 및 장소

- 일 시 : 2003년 11월 29일(토) 20: 30분경
- 장 소 : 서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 주택

▶ 피해현황

- 인명피해 : 부상 2명
- 재산피해 : 없음

▶ 시설현황

- 가스보일러: 1대 (FF: 강제급배기식, 93년 2월 제조)

▶ 사고내용

- 가스보일러를 가동한 후 약 10분안에 보일러 연도 및 보일러실 내부에서 CO가 허용농도 이상의 수치가 검출된 것으로 보아 가스보일러의 노후 등으로 인한 불완전연소에 의하여 발생된 CO가 실내로 유입, 중독된 사고임.

▶ 사고원인



- 보일러실 및 실내에서 다량의 CO가스가 검출된 것으로 보아 보일러가 가동되면서 발생한 폐 가스(CO)가 거실 및 방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.

▶ 사고원인

- 보일러를 설치한 수요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미흡
- 노후보일러를 정기적인 A/S나 교체 없이 장기간 사용

▶ 문제점

- 공급자의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사용자에 대한 홍보 강화
- 가스보일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기적인 A/S 및 적정기간 내에 교체하도록 제도



사례2. 과대 조리기구 큰 돌판 사용 사고

▶ 사고일시 및 장소

- 일 시 : 2003년 9월 12일(금) 23시 00분경
- 장 소 : 충남 수신면 신풍리 주택 마당

▶ 피해현황

- 인명피해: 부상2명
- 재산피해: 없음

▶ 시설현황

- 이동식부탄가스연소기: 1대
- 접합용기: 1개

▶ 사고내용

- 이동식부탄가스연소기의 삼발이 위에 삼발이 보다 넓은 (가로35cm×세로 30cm 두께 3.5cm)의 돌판 조리 기구를 올려놓고 새우를 구어 먹고 소화상태로 있던 중 연소기에 장착되었던 접합용기가 복사열에 의하여 파열된 사고임

▶ 사고원인

- 이동식부탄가스연소기 사용 시 삼발이 보다 큰 과대 조리기구 사용

▶ 대책

- 이동식부탄가스 연소기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 강화

사례3. 연소기 철거 후 막음처리 미 조치 사고

▶ 사고일시 및 장소

- 일 시 : 2003년 1월 26일(일) 12시 57분경
- 장 소 : 울산북구 염포동 상가주택 2층

▶ 피해현황

- 인명피해: 부상1명
- 재산피해: 약54만원

▶ 시설현황

- LPG 용기(20kg): 1개
- 압력 조정기(4kg/h): 1개

▶ 사고내용

- 예전에 사용하던 1가구 가스렌지를 필요가 없어 연소기만 철거한 후에 막음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상태에서 사고당일 ○○○의아들 ○○○이 2구 가스렌지 위에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 1구 쪽 호스 콕을 잘못 열어 가스렌지를 여러 번 켜는 순간 1구 호스 쪽에서 누출 체류된 가스가 가스렌지의 점화용 불꽃(스파크)에 의해 폭발한 사고임.

▶ 사고원인

- 연소기 철거 후 막음처리 미실시 상태에서 중간밸브 오조작

▶ 문제점

- 연소기 철거 후 막음처리 미실시
- 소비자시설 안전점검 부 적정 실시